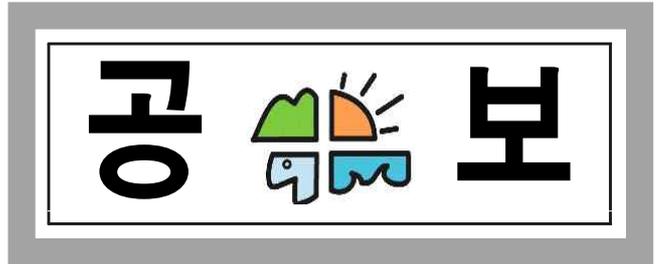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43호 2014년 3월 18일(화)

공 고

-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3월 18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공동주택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영하던 사항이, 2014.1.10일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2 삭제(안 제3조)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
제3조(지원범위)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,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.		제3조(지원범위)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														
[별표2] □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(제3조 관련)		[별표2]삭제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 사업비</th> <th>지원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천만원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× 70/1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× 60/1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천만원 초과</td> <td>총 사업비× 50/1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지원기준	비고	1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70/100		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60/100		2천만원 초과	총 사업비× 50/100					
총 사업비	지원기준	비고														
1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70/100															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60/100															
2천만원 초과	총 사업비× 50/100															
※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																

4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2014년4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청(참조:주택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 217-701 /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 (전화:033-693-2772, FAX:033-639-2314
E-mail : wch05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FAX, 시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5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 원철호(전화번호: 033-639-27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3조(지원범위)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

[별표2]삭제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
<p>제3조(지원범위)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,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p> <p>[별표2]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총 사업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지원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천만원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× 70/1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× 60/1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천만원 초과</td> <td>총 사업비× 50/1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</p>		총 사업비	지원기준	비고	1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70/100		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60/100		2천만원 초과	총 사업비× 50/100		<p>제3조(지원범위)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</p> <p>[별표2]삭제</p>		
총 사업비	지원기준	비고														
1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70/100															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총 사업비× 60/100															
2천만원 초과	총 사업비× 50/100													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주택법

제43조(관리주체 등) ⑧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□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

제5조(지원범위)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5.06, 2014.1.10>

[별표 1]

□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(제5조 관련)

규 모(세 대 수)	지원비율(%)	지원상한액
100세대 미만	사업비의 70%이하	1천만원
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사업비의 60%이하	1천5백만원
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사업비의 50%이하	2천만원
500세대 이상	사업비의 50%이하	3천만원

※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%까지 우선 지원한다